

우토로지역 제일동포 거주권 문제 조사보고서

인권 자료실		
등록일	상류기호	자료번호
98 3/20	B33	18

■ 조사단 : 박연철(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기호(신부, 천주교인권위원회)
김경남(목사, 한국교회인권센터)

■ 조사기간 : 1997년 5월 24일 - 28일

우도로지역 제일동포 거주권 문제 조사보고서

■ 조사단 : 박연철(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기호(신부, 천주교인권위원회)
김경남(목사, 한국교회인권센터)

■ 조사기간 : 1997년 5월 24일 - 28일

목 차

1. 머리말	3
2. 우토로지역 조사단의 일정과 편성	4
3. 우토로지역의 현황	16
4.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 소송의 진행	22
5. 전후보상처리 및 국제규약상의 거주권 인정문제	27
6. 우토로를 지원하는 모임의 필요성	28

우토로지역 재일동포 거주권에 대한 조사보고서

1. 머릿말

한국인권단체협의회에서는 지난 1997년 5월 24일부터 28일 사이에 日本國 京都府 宇治市에 위치한 우토로지역 재일동포의 거주권문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3인의 조사단원을 파견하였다. 우토로지역의 재일동포들이 현재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였는가는 여러 해전부터 알려져 왔고, 세계 각국의 NGO를 통하여 정주외국인의 거주권문제 및 전후보상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조사방문은 우토로지역자치회의 요청도 있어서, 매년 5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개최되는 우토로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이 잡혀졌었다. 1997년 5월 25일 일요일 오후1시 우토로마을 중앙쯤에 위치한 회관앞 마당 약 3-400평에 삼삼오오 주민들이 모여들고, 우토로지역에 관심을 가져온 시의원 및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의 회원들도 속속 모였다. 그리고, 같은 지역의 대학생들로 보이는 젊은이들도 상당수 참석하였다.

마당집회가 끝난후에는 마을부녀자들이 모여 결성한 풍물패들이 놀이패복장을 하고 洪貞子씨(41)의 지휘를 받으며 일사불란하게 앞장서 나아 가고 그 뒤로 집회에 참석한 우토로주민,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 회원, 그외 젊은이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뒤따라 갔다. 풍물패의 동작과 음향은 우리 민족에 고유한 것이지만, '우토로지역 철거를 반대한다. 일산차체는 협의에 응하라'는 구호는 일본말로 연호하고 있었다. 우리 조사단원들도 앞줄쪽에 서서 함께 행진하였다. 집회는 미리 신고하였는지 질서유지경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위주민들을 계도하여 주었다. 시위주민들은 우토로마을을 떠나 옛날 재일동포 1세 노동자들이 피땀흘려 닦아 놓은 비행장활주로 부지 위에 지금은 아름답게 조성된 주택가를 지나 日産車體株式會社の 문을 에돌아 그 정문까지 나아가서 항의시위를 하고 오후 4시경 돌아 왔다.

아직 수도물도 반만 들어 오지 않는다는 열악한 환경의 우토로를 떠나 그와 너무나 대비되는 일본국 특유의 아담하게 정돈된 주택가를 지나고, 우토로주민들에게 지금의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장본인이며 세계적으로 알려진 거대회사인 일산차체를 돌아 온 것이다. 그때부터 다시 마당에서 풍성한 불고기파티가 벌어졌다. 우토로지역 주민들에게 모국을 의식하면서 결집할 수 있는 상징적 순서였다.

사전에 우토로지역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그 행사의 참된 의미와 깊이를 신속히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조사기간중에 그들이 집중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안내하여 주어서 그들이 봉착하고 있는 문제와 앞으로 모국인들이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어렵듯이 알아 왔을 뿐이다.

2. 우토로지역조사단의 일정과 편성

가. 인권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9단체중 천주교인원위원회 박기호 신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경남 목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연철 변호사 3인이 조사단원이 되었다. 김경남 목사는 귀국하기전 몇년동안 일본에 체재하면서 활동하여 그곳 사정에 밝았고 일에 능통하며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주었으며, 조사단원은 서로가 평소 교분이 있었던 터라 조사기간동안 서로 협력하여 매우 원만하게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나. 조사단의 일정은 그곳 우토로 주민들이 미리 작성하였고, 약간의 부분에 대하여서 서로 협의하였다.

(1) 1997년 5월 24일(토) 13:30 일본 관서 공항 도착하여 우토로회관에 이른 시각은 19:00경이었다. 그 때부터 약 두시간 이상 주민대표들과 협의를 하였다. 조사단원들이 사전에 송부한 질문서에 대한 해답을 주민대표들로부터 들었으며, 향후 일정 및 활동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늦은 저녁식사를 하였다.

(2) 1997년 5월 25일(일) 오전에 조사단원들은 우토로 내에 위치한 작은 일본인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렸고, 오후에 바로 머리말에 소개한 우토로집회에 참가하였다. 밤에는 숙소에 돌아 와 우지시를 방문

하여 질문할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그 질문서는 다음날 오전중으로 우토로정내회(町内會)의 엄명부 부회장의 책임하에 번역하기로 하였다.

(3) 1997년 5월 26일(월) 오전중에는 우토로지역 현지조사를 하면서 그곳 주민들로부터 직접 현황을 청취하였으며, 오후 1시에는 우지시의 회 아사이(淺井)시의원의 소개로 나가노(長野) 조역(부시장)을 면담하였으며, 우지시 출입기자단과 회견하였다. 우지시는 교오토오부에 속한 소규모의 위성시인데 출입기자들은 상당수 되었다. 19:30 부터 약 두시간동안은 우토로회관에서 마을주민들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조사단들도 이 회의에 참가하여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집회가 끝난후에는 우토로정내회 간부 및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의 회원들과 함께 모여 다음날 교오토오부를 방문할 때의 질문사항 및 기자회견후 발표할 성명서를 밤늦게 까지 작성하였다.

(4) 1997년 5월 27일(화) 오전에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부민홀에서 교오토오시 간부들과 면담하며, 질의응답을 하였다. 면담후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우지시와 교오토오부를 방문한 이후 파악한 내용에 따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오후 6시에는 교오토오부에 있는 오타니(大谷)대학에서 박기호 신부가 우토로지역을 조사한 후의 일반적 소견을, 박연철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원고인 '우토로지역 재일 한국(조선)인의 거주권에 관한 소견'을 토대로 강연하였다. 강연전에 우토로지역의 과거와 현재에 관한 슬라이드가 상영되었다.

(5) 1997년 5월 28일(수) 조사단원중 1인의 국내 스케줄로 인하여 새벽 5시 30분에 우지시를 떠나 9시 20분 관서공항발 비행기편으로 귀환하였다. 이때 엄명부 부회장이 그간의 소송자료를 복사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일부만 복사하여 전하였고, 나머지는 후일에 항공편으로 전하였다.

다. 조사단의 활동내용

조사단의 활동내용은 전술한 일정 및 우지시와 교오토오부를 방문하였을 때의 질의응답, 기자회견의 내용, 성명서등을 전재함으로써 대신하고자 한다.

(1) 우지시에 대한 질문 및 답변

(가) 질문사항은 정확하게 옮길 수 있으나 답변내용은 농친 경우도 많았다. 질문서를 미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시담당자들에게 제공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말로 질문하고 이를 통역하여 전하고, 일본말로 답하고 이를 다시 한국말로 통역하여 전하는 과정이 매우 불편하고 시간이 무척 많이 소요되었다. 그 답변도 정확하게 옮기기는 힘들었다.

(사진 2- 우지시를 방문하여 면담하고 있는 사진)



(나) 질문 및 답변

먼저 지금까지 우토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조선)인들에 대하여 우치시에 거주하는 일원으로서 보호하여 주고 계신데 대하여 한국인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몇가지 시의 계획과 방침을 여쭙어 보고자 합니다.

1) 우토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조선)인에 대한 우지시의 기본방침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지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약 3,000명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본국인과 마찬가지로의 거주권을 인정하고 있다.)

1-1) 우지시에서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지역발전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관여한다. 의료보호, 인권문제상담을 하고 있다.)

1-2) 이 지역에는 1987년경에 비로소 그 일부세대(80세대중 절반)에 상수도가 공급되었다고 하는데, 수도관의 매설은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다.)

1-3) 전력의 공급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수도는 시에서 관리하나, 전력은 별도의 회사가 관리하고 있다.)

1-4) 수도관매설공사를 1987년경까지 미루어 온 것은 우지시에서도 우토로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몹시 어렵게 하는데 일조를 한 것이 아닐까요.

(수도공사는 일산차체의 동의를 필요하였으며, 시로서는 위 회사에 많은 요구를 하여왔다.)

1-5) 1997년 5월 21일자 '宇治市政'(宇治市)에 의하면 '전지역에의 급수를 목표로하여'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 그 내용중에 아직 수도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40세대에 대한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우토로지역을 상수도미보급지역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샘물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아직 있기는 한데, 우토로지역에도 속히 수도물이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2) 우토로지역에 건물을 지을 경우 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어진 건물에 대하여 건물등기를 허용하는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건축허가신청과정에서 소유자의 승락이 필요하다. 그러나 건물 등기는 법무성이 주관하고 있으므로 그 경위는 잘 모른다.)

3) 우지시에서는 국제연합에서 제정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에 규정된 주거권(주민환경의 개선 및 보장을 받을 권리)을 어느 정도 시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우지시로서는 이 규약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다. 다음에 더 검토하여 정식으로 답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4) 우토로지역주민들과 (유)서일본식산 사이에 8년째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토오지법의 제 1심 판결이 불원간 선고되리라고 들었습니다.

(이하의 질문에 대하여는 소송계속중이므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4-1) 만일 우토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조선)인들이 패소하여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어떠한 사태가 야기될 것인지 예상하여 보았습니까.

4-2) 그들을 다른 장소에 이주시킬 대책은 있습니까.

4-3) 그들이 죽어도 우토로지역을 떠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건물철거반과 충돌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았습니까.

4-4) 우지시에서는 지금이라도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직접 중재에 나설 의향은 있습니까.

5) 우지시에서는 일산차체가 단지 자기회사의 부담을 덜 생각으로 이 지역을 제 3자에게 처분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는가요.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

5-1) 1940년경 교토오부에서 비행장, 승무원양성소, 항공기 제조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확보한 부지는 100여만평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그 부지는 일산차체, 자위대기지,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크게 3분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 비행장중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바뀐 과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5-2) 조선인 노동자들이 거주하던 합바구역과 일산차체부지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우토지역이 일산차체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었습니까.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6) 우토로지역을 매수한 (유)서일본식산은 이 지역을 가네자와건설(金澤建設)의 배후조종을 받아 매수한 외에 설립후 8년동안 아무런 영업실적이 없는 休眠會社입니다. 이런 회사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가요.

(가네자와건설의 등록지역이 다르므로 우지시에 질문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7) 우토로지역 한국(조선)인이 우지시의 행정에 방해되는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

7-1) 우지지역내의 한국(조선)인이 시의 발전에 공헌한 바는 없습니까.

(공헌하여 왔다)

7-2)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에 학자, 노동활동가, 기자들 뿐 아니라, 공무원도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통역과정에서 공무원은 제외).

(좋은 일이다)

7-3) 우지시에서는 역내 거주하는 한국(조선)인에 대하여 지방참정권을 부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도부에 속하는 11개 시중 지방참정권지지결의를 채택한 7개시중에 우지시도 포함되고 있습니까.(우지시에서는 지지결의를 한 시라고 하므로 이 질문은 생략하였음)

(2) 교오토오부에 대한 질문 및 답변

(가) 교오토오부야말로 전후에 우토로지역 문제를 처리하였던 당사자이다. 교오토오부는 우지시의 경우보다 우토로문제에 대하여 냉랭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사전 귀뜸이 있었는데, 과연 교오토오부에서는 우토로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견해를 말할 수 있는 책임자를 면담자로 보내지 않고 다케다 모리치(武田盛治)라는 府民勞動部長(우리 시의 상공노동국장급인 듯)과 국제과장을 주면담자로 보냈기 때문에 과연 그가 이 문제를 답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야 했었다. 그리고 맨처음 대면에서 참석자들에 대한 소개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다시 물어야 했으며, 교오토오부와의 면담을 주선한 이케모토 준이치(池本準一)의 원의 호의는 고마웠으나 인사말이 통역되지를 않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다. 그후 통역과정에서도 중대한 오역이 발생하여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였다. 재일동포들은 우지시에서보다는 훨씬 더 부자유스러운 것 같았다. 재일동포들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었는지 모를 일이다.

(나) 질문 및 답변

첫째, 우토로토지문제의 역사적 경과와 교오토오부와의 관련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1) 교오토오비행장 건설에 있어서 1940년 3월의 항공국 장관과 교오토오부 지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교오토오비행장건설에 관한 협정서」를 열람하는 일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보공개의무는 다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우토로지역은 재판중이어서 행정은 그 귀추에 따라야 하는 제한을 받고 있다.)

(이때 국제조약의 이행의무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자 국제조약도

국내법에 의하여 구체화된 경우에만 이행의무가 있다고 답변하고, 그 차원에서는 교오토오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2) 당시 비행장건설에 종사했던 1,300인 조선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노동조건, 고용형태, 생활실태 등은 어떠했던가요. 당시의 고용형태를 기록하였던 「건설사무소서무세칙」이라는 교오토오부의 문서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열람 혹은 복사본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공개하겠다)

3) 1945년 8월 15일 종전 당시 우토로지역에 방치되었던 한국,조선인 노동자는 1,300여명이 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후 어떻게 분산되었는지 파악되어 있는가요?

(전후처리의 문제이다.-노동부장은 우토로문제가 전후처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는 재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일본국이 국제연합의 거주권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답하였으나 그 대답은 통역자가 질문내용을 잘못 통역함에 따라 잘못 답한 것으로 나중에 정정되었다.)

4) 일본정부의 대행업무라 할 수 있는 비행장건설에 종사했던 우토로 주민에 대해 그 어떤 보상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함바가 있던 자리에 계속 방치했던 것에 대한 교오토오부의 견해를 들려 주십시오.

(전항과 같은 취지의 답을 하였다.- 교오토오부에서 중앙정부에 전 후보상 문제를 건의한 적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없다고 답한 것으로 기억된다)

둘째, 우토로토지매매에 관한 국토법상의 신고에 관하여

1) 1986년 12월에 되어진 국토법상의 신고(계출)인은 히라야마(平山 林夫, 한국명은 허창구)씨 개인과 일산차체(주)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상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는 (유)서일본식산과 일산차체(주)라

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동 법률에 위반되는 토지취득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신고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부로서의 견해를 들려 주십시오.

(중앙정부의 지도를 받고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

- 2) 국토법상의 신고에는 토지의 이용목적이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토로토지 이용목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토로주민이 계속 살고 있는 것을 전제로 했던 것이 아니었다면 경도부가 등기신청을 수리한 것으로 말미암아 주민의 생활이 위협당하고 있는 오늘의 사태를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교오토오부의 견해를 들려 주십시오.

(전 항과 같은 대답을 하다)

셋째, 국제인권규약과 우토로주민의 거주 권리에 대하여

- 1) 거주 권리는 것은 안전과 평온이 유지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장소에서 생활할 권리이며 「국제인권규약, 사회권규약 제 11조」에 기초한 것으로서 국내의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현재 우토로주민의 상황이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경도부의 견해를 들려 주십시오.

(그에 관한 국제규약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 2)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3년에 「강제퇴거에 관한 결의」를 일본정부를 포함한 54개국대표가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강제퇴거」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유엔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와 우토로토지문제와의 관련에 관한 경도부로서의 인식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항과 같은 취지의 답을 하다)

- 3) 국제법상 일본정부와 지방자치체는 기본적 인권인 「거주 권리」

의 실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의 「사회권규약위원회」는 택지개발업자나 토지소유자등이 제3자의 권리남용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것도 그 범주에 포함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법에 따라 계승중인 안전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 인권을 지키는 행정의 입장에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경도부로서의 견해를 들려 주십시오.

(전항과 같은 취지의 답을 하다)

- 4) 교오토오부로서 우토로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정함에 있어, 이상과 같이 그 역사적 경위 및 국제법상의 관점에 따라, 교오토오부는 우토로토지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개입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되어 있는 행정시책이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우토로토지 전부를 교오토오부에서 일단 매입하여 주민을 주체로 하여 마을을 건립할 의사는 없는 것입니까.

(전쟁의 결과로서 발생한 문제이니 전후처리의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라. 성명서

교오토오부 출입기자들과 회견한 후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이다.

“우리들 조사단은 1997년 5월 24일 우토로에 도착한 이래 우토로주민들로부터 청취 조사를 시작하여 현지인의 역사, 생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한국에서 우토로에 관한 자료를 일고 먼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하고 주민 모두가 극도의 불안에 가득차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토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우리는 보다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사단은 어제는 우지시, 오늘은 교오토오부와 면담하고 우토로문제에 대한 각각의 인식, 견해, 대책을 질문하였습니다만 두 당국으로부터의 답변은 도저히 우리 조사단이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조사단은 각 행정단체의 인식의 안일함에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일본과 같은 문명국가에서 50년 이상 계속 살아온 사람들이 강제 퇴거의 불안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이 인권침해의 원인은 일산과 같은 국제적인 대기업에 의하여 일어난 것에 대하여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이와 같은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토로문제는 지금 법원에 계속중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법률로 해결될 문제라고하기보다는 역사적 사회적 문제이므로 먼저 행정당국의 힘에 의해 구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행정당국은 구체적인 대책을 취하여 이를 방지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사단은 귀국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우토로동포를 지키기 위해 국제여론에 호소하고 이 일을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일본과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인권규약에 기초하여 우토로주민의 거주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토로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기회있을 때마다 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알리고 국제여론에 호소할 것을 여기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1997년 5월 27 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우토로지역문제조사단 일동

마. 지역언론의 반향

우지시 및 교오토오부의 지역 신문, TV는 우토로조사단의 일정과 활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시하며, 조사기간 내내 활동과 주장 내용을 보도하였다.

1997년 5월 27일자 毎日新聞(京都판) '한국 NGO 우토로지구 시찰- 퇴거는 인권문제'

朝日新聞(南京都판) '한국인권협 우토로조사단, 우지시에 대응책 촉구, 거주권에 관한 즉답은 얻지 못해'

讀賣新聞 '우토로문제, 한국조사단 해결희망, 우지시방문 부시장이 배려약속'

京都新聞(南部판) '한국의 조사단이 우지시 방문, 행정적 대응을 요구, 거주권반영은 문서로 회답하기로'

城南新報 '우토로지원을 위하여 한국으로부터 조사단 내일' '집회, 시위에 참가, 동포문제해결에 진력하여 줄 것을 시에 요청, 토지재판의 판결을 기다리는 주민을 격려'

洛南타임즈 '한국으로부터의 조사단, 우지시 방문, 우토로토지문제로 부시장 면담, 나가노조역, 종래 방침에 따를 것임, 이해를 보임' 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

1997년 5월 28일자에는 교오토오부 방문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ウトロ支援へ韓国から調査団

三人権団体協が来日

ウトロを訪問したのは、韓国の非暴力や宗教活動者の人権組織で作るNGO(非政府組織)のバク・ヨン Chol 氏(尹慶士、バク・キホ 氏(尹文)、ナム・キョンナム 氏(牧野)の三人。一行は二十四日夕刻にウトロへ到着後、二十五日にはウトロ

の集いに参加し、集まった約二百人の支援者を前に文明国日本で、人間の基本条約の居住権が脅かされているのは理解できない、その原因が韓国、朝鮮人への差別であるなど、朝鮮人への差別をなくさうと訴え、日産車工場まで抗議のデモ行進を行った。

二十五日夕刻の集いの場、パティなどで住民らと触れ合い、ウトロの歴史や裁判の経過などを聞いた一行は翌二十六日、宇治市役所を訪れ中野真樹助役と会談。その中で調査団は「もしウトロ地域に居住する韓国・朝鮮

人たちの建物が撤去される場合、どのような事態になるか予想されているのか」と中野助役に質問したところ、同助役は「基本的にそうしな事は避け、平和のうちに解決されるべきと考えている」「行政としては、戦中戦後の苦勞を踏まえ、

一定の配慮をもって(ウトロの)街づくりを進めていきたい。一日も早く問題が解決することを望んでいる」と、など、慎重に言葉を遣いつつ、対応、即答できない問題については十分調査し文書等で答えることで理解を求めた。

二十項目を超える質疑応答のほとんどが答え合わなかったが、調査団は「ウトロの問題に対しての理解には感謝している。

集い、デモに参加、市へ要請も

「同胞の問題解決へ尽力を!!」

土地裁判判決待ちの住民激励

宇治市伊勢田町ウトロ地区に住む在日韓国・朝鮮人対し、不動産会社・西日本殖産(本社大阪)が建物撤去と土地明け渡しを求めている「土地裁判」は現在、三度の和解交渉が決裂し判決待ちの状況となっているが、そのウトロ地域にこのほど「韓国入権団体協議会」の調査団(三人)が訪れ住民たちを激励。また宇治市に対して「ウトロに住む同胞の問題解決に尽力して!!」などと要請した。一行はきょう(二十五)日に府庁を訪問し同様の要請を行ったあと二十八日に帰国。韓国へ帰ってからは国連や人権団体へ調査結果を報告し問題解決へ世界的な支援を呼び掛けている。

進を行った。二十五日夕刻の集いの場、パティなどで住民らと触れ合い、ウトロの歴史や裁判の経過などを聞いた一行は翌二十六日、宇治市役所を訪れ中野真樹助役と会談。その中で調査団は「もしウトロ地域に居住する韓国・朝鮮

人たちの建物が撤去される場合、どのような事態になるか予想されているのか」と中野助役に質問したところ、同助役は「基本的にそうしな事は避け、平和のうちに解決されるべきと考えている」「行政としては、戦中戦後の苦勞を踏まえ、

一定の配慮をもって(ウトロの)街づくりを進めていきたい。一日も早く問題が解決することを望んでいる」と、など、慎重に言葉を遣いつつ、対応、即答できない問題については十分調査し文書等で答えることで理解を求めた。

二十項目を超える質疑応答のほとんどが答え合わなかったが、調査団は「ウトロの問題に対しての理解には感謝している。



発行所
城南新報
〒611 宇治市宇治里
電話 宇治 1221番
FAX (0774)22-5754

服部・西野医院
宇治市宇治一番
電話 0774-111111



【日産車体京都工場周辺をデモ行進するウトロ住民ら】

3. うとろ地域の現状

が. うとろ地域 住家

(1) うとろは 日本国 교오토오부(京都府) 우지시(宇治市) 이세다초(伊勢田町)에 자리잡은 지역의 이름이다. 약 21,000평방미터의 대지 위에 약 80세대 380인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재일동포들이다. 우토로는 한자나 히라가나로 표기하지 않고 외국어를 표기하듯 가다가나로 표기하고 있어서, 한국인이 거주하면서부터 그렇게 차별적으로 부르고 있지 않으나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 그러나, 츠쿠나미(筑波)대학 조교수 센모토 히데키(千本秀樹)의 조사에 의하면 그와 같은 취지는 없고 예부터 '우도구치(うど口)' 또는 한자로 '宇土口'로 표기되어 있었다고 한다.

(2) 1938년 말 일본국 체신성은 전국 5개소에 비행장 및 5년제 항공승무원양성소를 건설한다는 구상을 발표하고, 1939년말에는 일본국제항공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교오토오부 어목양촌(御牧兩村)지역 약 97만평 위에 체신성항공국비행장 30만평, 승무원양성소 2만평, 일국공업비행장 229,000.평, 그 예비지 22,000평,그 공장 40만평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여, 1940년 4월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위 공사에는 상시 약 2,000여명의 노동자가 동원되었는데 이중 한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았고, 종전시에는 약 1,300명 정도였다고 한다.

(3) 우토로지역은 이들 노동자의 집단숙식처로서 소위 함바(飯場)라고 불리우는 곳이었다. 함바의 사정은 너무나 열악하였다. 지붕이 없어 비나 눈을 가리기 어려웠고, 2칸의 바락크건물에 12명남짓이 함께 기거하였다고 한다. 그 당시의 항공사진이 남아 있어 우토로지역 함바와 승무원숙소의 건물이 뚜렷하게 비교되는데 승무원숙소는 뚜렷하게 보이는 견고한 건물인데, 함바는 사진으로 그 형체를 분별하기 어려운 흐릿한 모습이다. 현재는 함바 및 그 터는 보존되고 승무원숙소는 없어졌지만 당시 전쟁요원들이 받는 후대와 속국의 노동자들이 당하는 노예상태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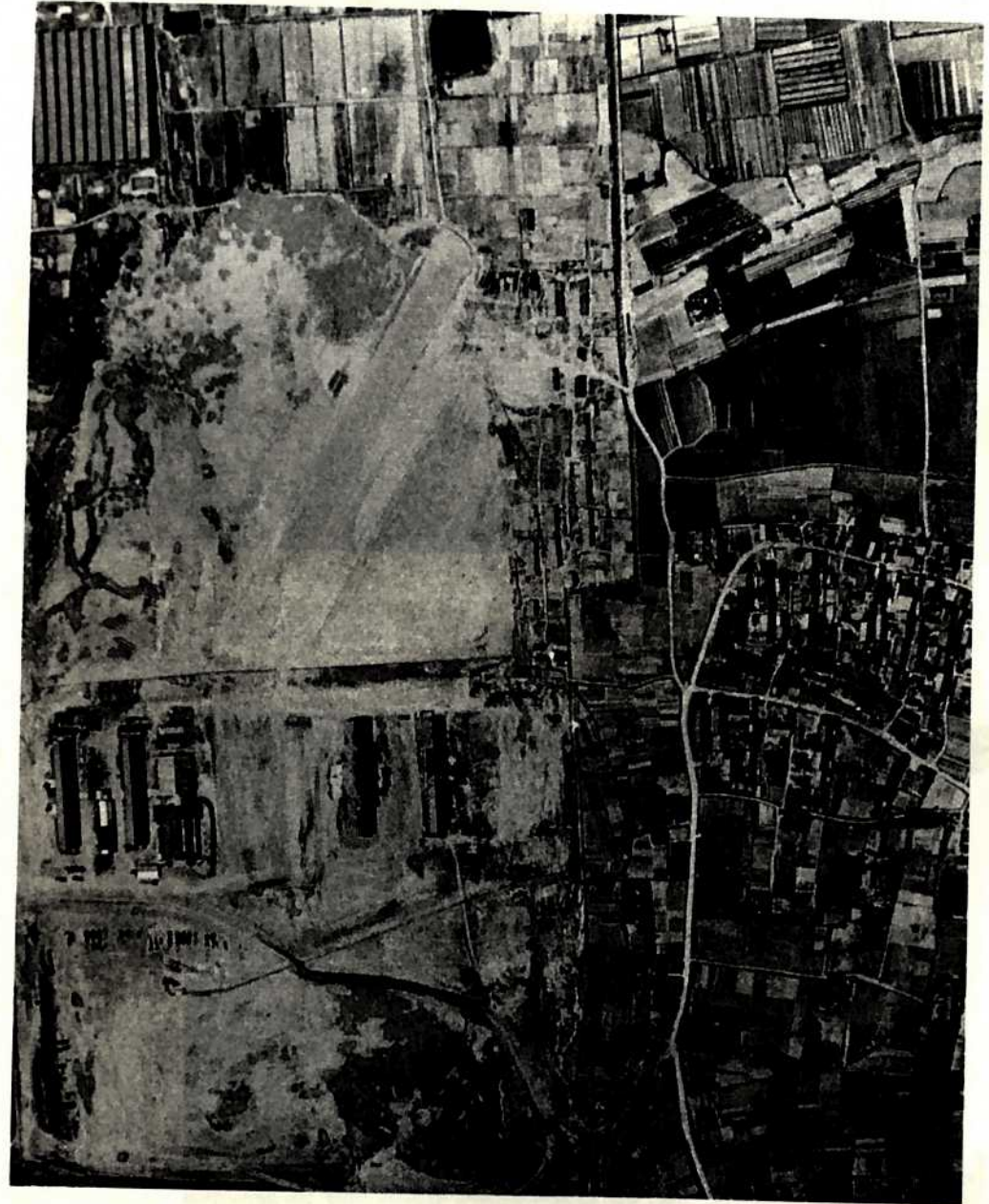
(우토로지역 위치도)



(사진 4 -지역노동사무소에서 내려다 본 우토로지역, 바로 옆의 일본인 주택가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사진 1 -비행장부지 오른쪽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건물은 승무원 숙소이고, 왼쪽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건물들이 노무자가 거주하던 함바들이다.)



(사진 5, 6 - 현재 남아 있는 함바의 외부정경, 및 내부모습)



(사진 7, 과거 비행장 부지위에 들어 선 주택가, 멀리 일산차체 건물이 보인다)



애초 비행장건설공사 예정기간은 2년이었으나, 자재부족 등으로 완공하지는 못하고 일부 시설을 이용하여 연습기를 생산하는 일방 수송기를 제조하여 시험하여 보았으나 실패한 가운데 1945년 8월에 패전하고 말았다. 한국인노동자는 주로 정지작업과 격납고건설작업에 동원되었다.

(4) 한국인 노동자들이 우토로지역에 어떻게 이주하여 갔었는지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영위하였는지는 주민들의 증언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징용 그자체는 아니었으나, 이 지역에서 노동을 하면 징용을 면할 수 있었던 곳이므로, 반강제적 동원이었으며, 이 지역을 떠나면 그 신변이 결코 안전하지 못하였었다. 이곳으로 이주하여 온 1세대는 거의 없고 그들을 부모로 모시고 함께 이끌려 온 세대가 현재 60세 이상이 되었는바, 그들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청취할 수 있다. 이웃사람들의 책자에 김임생(金壬生, 1992년 당시 79세), 강경남(姜景南, 당시 66세), 정귀련(鄭貴連, 당시 68세), 김군자(金君子, 당시 62세), 최중규(崔仲圭, 당시 75세)등이 당시 상황을 밝히고 있다. 조사단은 김임생, 황순례(黃順禮), 문광자(文光子)씨 등을 자택에서 면담할 수 있다.

나. 우토로지역의 현황

(1) 전후복구시절에 우토로주민들이 겪었던 비참한 생활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이들의 생활도 점차 안정되어 갔다. 그러나 이들의 생활은 자신의 주민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적절한 법적인 보호를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은 '수도물이 들어 오지 않는 생활'이었다. 교오토오부와 우지시는 주지하다시피 산세가 빼어나고 수량이 풍부한 명승지이다. 그곳 주민들은 오염되지 않은 생활용수를 충분하게 사용하면 쾌적한 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에, 유독 우토로지역 주민들에 대하여만 수도물이 공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지역 일부주택에 수도관이 매설된것은 종전 32년이 지난 1987년경이었고, 아직도 반수 정도의 세대에는 수도물이 공급되지않고 있다.

우지시의 현재 급수율은 97 %이며, 급수가 되지 않는 지역은 산간지역, 카스지역, 및 우토로지역 등 3%밖에 되지 않는다. 이중 카스지역에 대하여도 급수관시설을 할 계획을 세워서 급수가 불가능 내지 불필요한 산간지방을 빼놓고는 우지시가 유일한 미급수지역으로 남게 된다. 우토로지역에 1987년도에 반수 정도의 세대에나마 수도물이 공급된 것은 요행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현재 어느 집에 수도물이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에 대하여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우지시로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수도관매설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할 뿐이다.

(2) 일본의 패전으로 인하여 다시 그곳에서 노동하던 상당수의 한국인이 고국으로 귀환하였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귀환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우토로지역에서 머물러 살게 되었다. 패전후 교오토오비행장건설지역은 미군이 접수하였으며, 그들은 우토로지역에 살고 있던 노무자들의 철수를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물리력으로 철수시키기 위하여 위협사격까지 가하였으나, 달리 갈 곳이 없었던 주민들은 이에 저항하고 물러나지를 아니하였다. 이때 맨 앞에 서서 투쟁하던 분 가운데는 발에 총상을 입은 사람도 있었다. 결국 미군들은 우토로지역 주민들을 쫓아내는 것을 포기하였고, 미군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우토로지역 주민들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살게 되었다. 우토로지역 주민들은 비행장으로 건설하였다가 농경지로 전환된 지역들의 농토를 대신 경작하여 보수를 받으면서 살기도 하였다.

(3) 현재 80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교오토오비행장 건설시부터 거주한 세대도 있고, 그 2세대 있으며, 종전후에 새로 동포거주지역인 이곳으로 옮겨 와서 사는 세대도 있다. 재일동포와 결혼하여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여성도 있으며, 일본인이면서 한국인과 결혼한 연유등으로 이곳에 함께 살고 있는 여성도 종종 있었다. 이들은 우토로지역토지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미약하여 집회에 잘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4) 우토로지역은 긴테츠전차(近鐵電車)로 교오토오역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20분, 이세다역으로부터 서쪽으로 조성된 넓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다. 우토로지역 옆으로는 陸上自衛隊大久保駐屯地가 있고, 넓은 주택가 너머로 엄청난 규모의 日産車體京都工場의 건물이 보인다. 우토로지역과 일산차체 사이에 조성된 광활한 주택가는 과거 한국인 노동자들이 피땀흘려 닦아 놓은 비행장부지들이다.

우토로지역에 가까운 노동사무소의 옥상에 올라가면 우토로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지역주민들이 종사하는 직업이 주로 소규모의 전기, 토목, 건설, 고물상영업등 자영업체이어서인지 지역전체가 다소 어수선하게 보인다.

종전의 함바는 거의 사라지고 그 이후 수차 새로 개축하였기 때문에 옛 함바시대의 건축물은 몇채 남아 있지 않아 그중 두군데를 돌아 보았다(사진). 새로 지은 건물들은 제법 살만하게 보이지만, 옛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어둡고 비좁기 짝이 없었다. 또 여러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다세대주택 같은 건물이 한 채 있었고, 상당히 호화스러운 주택도 한채 있었으며, 사람이 살지 않아 낙후되어 가고 있는 집도 한 채 있었다. 그 호화주택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의 집이고, 빈집은 우토로정내회 회장이었다가 우토로토지문제로 주민들을 배신하고 도주하였다는 허창구씨의 집이었다. 동인은 현재 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출석하지 않고 있다. 동인은 교오토오의 어느 곳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출입하고 있으며, 자녀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고 한다.

(5) 이곳 우토로지역 주민들 약 60% 정도가 건물자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한다. 그 이외에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양이다.일본에서는 건축허가없이 집을 지었을지라도 건물등기가 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다. 좀 의아했지만 몇몇 건물에 대하여 건물등기부가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가 하면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는 경우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게 하므로 소실된 부분을 제한 나머지 부분에서 웅색하게 살고 있는 집도 있었다. 현재 우토로지역 토지에 대하여는 (유)서일본식산에서 매년 약 20,000,000엔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하여 상당히 근심이 되었다. 위 세금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우토로주민들과 화해하는데 위 회사에서 기왕에 납부한 세금이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6) 지역 가운데쯤에는 회관이 건립되어 있고, 그 앞으로 마당이 있어서 주민회의와 집회는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회관은 총련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인지 회관내에는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이 벽에 걸려 있다. 그렇지만 이 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총련계의 동포만은 아니다. 이곳 동포들은 강인한 생명력과 의지를 가진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민족교육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있었다. 정내회 일을 담당하고 있는 金善側 선생, 金小道 선생 같은 분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정신과 건강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었다. 만약 이제라도 거주권만 보장된다면 훨씬 더 안정된 주민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진 3- 우토로정내회집회)



4.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청구소송의 진행

가. (유)서일본식산의 소유권취득

일찌기 비행장 건설을 위하여 수용된 약 100만평의 부지는 종전후 불하되었다. 일본국제항공공업 주식회사는 미군점령후 민수공장으로 전환하고, 회사명을 일국공업으로 바꾸어 버스의 차체를 만들었고, 한국 전쟁의 호황기를 거쳐 성장한 이 회사는 日産資本산하에 들어가 오늘날 '일산차체'라는 대기업으로 발전하였다. 위 일산차체는 전쟁전 국책회사를 인계한 청산회사의 흡수합병과정을 거쳐 1962년 8월 우토로지역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되었다. 일산차체는 우토로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몇 차례 서면으로 토지명도를 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적극적으로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던 중 1987년 3월 이 지역을 유한회사 서일본식산(大阪府 枚方市 長尾家具町 2丁目 15番地 131, 부동산등기부상의 본점 大阪府 枚方市 養父西町 13番地の 3號, 代表取締役 稻本八十八)에 매각하였다. 이 매각과정에 같은 우토로에 거주하던 제일동포 허창구가 개입하고 있다. 일산차체주식회사가 소화62년(1987년) 3월 9일 허창구에게 위 우토로지역 21,333.51평방미터 일체를 대금 4억엔에 매도하는 계약서가 발견되었다. 허창구는 같은 해 5월 9일 유한회사 서일본식산에 전매하였다. 그런데 1987년 8월 12일 일산차체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회사는 위의 유한회사 서일본식산이다. 그렇다면 허창구는 위 서일본식산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결국 허창구가 위 우토로지역을 팔아넘기는데 거간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허창구는 우토로지역의 지구자치회 회장을 자칭하였던 자이다.

(유)서일본식산은 부동산회사이며, 우토로지역을 매수하여 그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소화 62년(1987년) 4월 30일 설립된 회사이다. 위 회사는 1987년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1988년 12월에는 주민들에게 무조건 퇴거하도록 통보하였으며, 1989년 2월에는 교오토오지방법원에 제 1차로 토지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건물해체업자를 우토로마을에 불시에 진입시켜 철거하려다가 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8년이 지난 현재까지 토지명도소송이 진행중이다.

우토로지역 주민들을 위하여는 가나가와(金川 琢郎), 가와모토(河本 光平), 호리(堀 和行) 등 4명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활동중이다.

나. 현재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토로지역의 지번 및 지적은 다음과 같다.

宇治市 伊勢田町	우토로 51번지	14,832	평방미터
	51번지의 7	1. 25	
	8	6. 40	
	9	264. 03	
	10	105. 15	
	11	535. 51	
	12	1. 65	
	13	6. 12	
	中()荒 60번지	3,969. 13	
	60번지의 33	166. 79	
	34	134. 65	
	35	158. 83	
	36	38. 01	
	37	22. 30	
	남산 21번의 2	1,090. 89	
	총 15필지	21,333. 51	평방미터

다. (유)서일본식산의 의도

주식회사 가네자와(金澤)토건(교오토오시 남구 상도 우?립정 1번지, 대표취체역 金澤德信)과 (유)서일본식산은 삼영지소주식회사(오사카시 북구 서?? 5정목 1번 15호 대표취체역 ?야통치)와의 사이에 소화 63년(1988년) 11월 22일 계획호수 400호 확보, 주택금융금고,주택단지B의 적용허가를 얻는 일, 개발허가 및 건축확인신청허가를 얻는 일, 현 거주인들과의 가옥부지명도교섭, 화해조서작성, 사용권의 해제에 관한 교섭권 등에 관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유)서일본식산의 배후에는 가네자와토건이라는 건설업체가 있었으며, 위 업체에서 궁극적으로 우토로지역을 재개발하

여 주택단지를 건설할 목표로, (유)서일본식산, 허창구를 내세워 일산차체로부터 우토로지역 소유권을 취득하게한 것이다. 이것은 건설업계의 상도의에 크게 벗어난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게 되어 가네자와토건은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우토로지역에 대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원동력은 위 토지를 일산차체로부터 사들인 자금주로 보고 있다.

라. 소송의 진행

(1) 유한회사 서일본식산은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1989. 2월 제 1차로 소송을 제기한 이래 17차에 걸쳐 나누어 제기하고 있다. 제 15차 소송의 제기일은 헤이세이(平成) 원년(1989년) 11월 30일이다. 위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도 교오토오지방법원 제 1,2,3,4,6 민사부로 나뉘어 있다.

(2) 제 1차로 이재일(松村 幸一), 강도자(田中 道子), 하수부(河本 秀夫), 정광일(福島 宏一), 김보귀(嚴本 寶貴)등 5명에 대하여, 19 . . . 제 2차로 김충근(山本 忠男), 유창열(本田 敬三), 송진우(齊藤 鎮佑), 전병식(玉山 太朗), 박남숙(山井 正憲) 등 5인에 대하여, 19 . . . 제 3차로 강영차(武田 榮次), 강춘자(山本 春子), 김원준(山本 源峻), 서광수(田中 秀夫), 서신웅(田中 信雄) 등 5인에 대하여, 제 4차로 유영구(竹村 永龜), 김충웅(龍本 忠雄), 김순자(新井 順子), 김교일(金山 教一) 4인에 대하여, 제 5차로 김경일(地田 慶一), 김경이(地田 慶二), 박영이(木山 英二), 정일남(福島 一男), 강종출(田中 武夫), 조경래(東谷 建一) 등 6명에 대하여, 제 6차로 강종수(田中 榮次), 조경래(東谷 榮一), 이성재(宮本 高成), 김소도(金井 良行), 岡本政雄 4명에 대하여, 제7차로 구정수(林正一), 강정길(田中正吉), 이효일(大原 孝一), 전중 , 최중규(山本 仲圭), 吉山泰和 등 6명에 대하여, 제 8차로 이절자(川崎 節子), 강인수(板井 仁秀), 문동기(岩中 守), 구영태(松山), 정길량(日山 吉郎), 高田 武 등 6명에 대하여, 제 9차로 김영용(水野 安春), 이충우(平田), 정대수(日山 大秀), 富永光雄, 성남룡(星山 南龍), 백용선(吉岡 武夫) 등 6명에 대하여, 제 10차로 남성우, 유광성, 엄종영(藤田 一郎), 小勞和美, 엄상구(玉川), 조용환(安本 次郎), 齊藤正義 등 7명에 대하여, 제 11차로 정우황(白岩), 변재진(清水 在眞), 유울렬(玉川 穰一), 유행자(中村 幸子), 김영태(金村 武夫), 松岡重治, 남기동(池田 實) 등 7

명에 대하여, 제 12차로 김임생(金山 壬生), 유운이, 강정남(金村 政男), 남정우(平本 九錫), 김판용(上本), 백용만(吉岡 勇) 등 6명에 대하여, 제 13차로 이화부(石井 和夫), 문기숙(原田 基淑) 등 2명에 대하여, 제 14차(미확인) 제 15차로 김군자에 대하여, 제 16차로 남정우에 대하여, 제 17차로 강행자, 김성근(上本 都雄), 백종용(吉岡 勇)에 대하여, 제 18차로 박재두(松岡 重男), 박정광(松岡 正一) 등에 대하여 각각 나누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3) 이 사건의 쟁점

(유)서일본식산은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거주자들의 건물철거 및 토지명도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거주민들의 소송대리인은 첫째 지상권등의 시효취득, 둘째 제3자를 위한 계약, 셋째 지상권의 성립, 넷째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주장하여 대항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피고대리인들의 항변사유를 이유있다고 할 것인지 확신을 가지기는 어려운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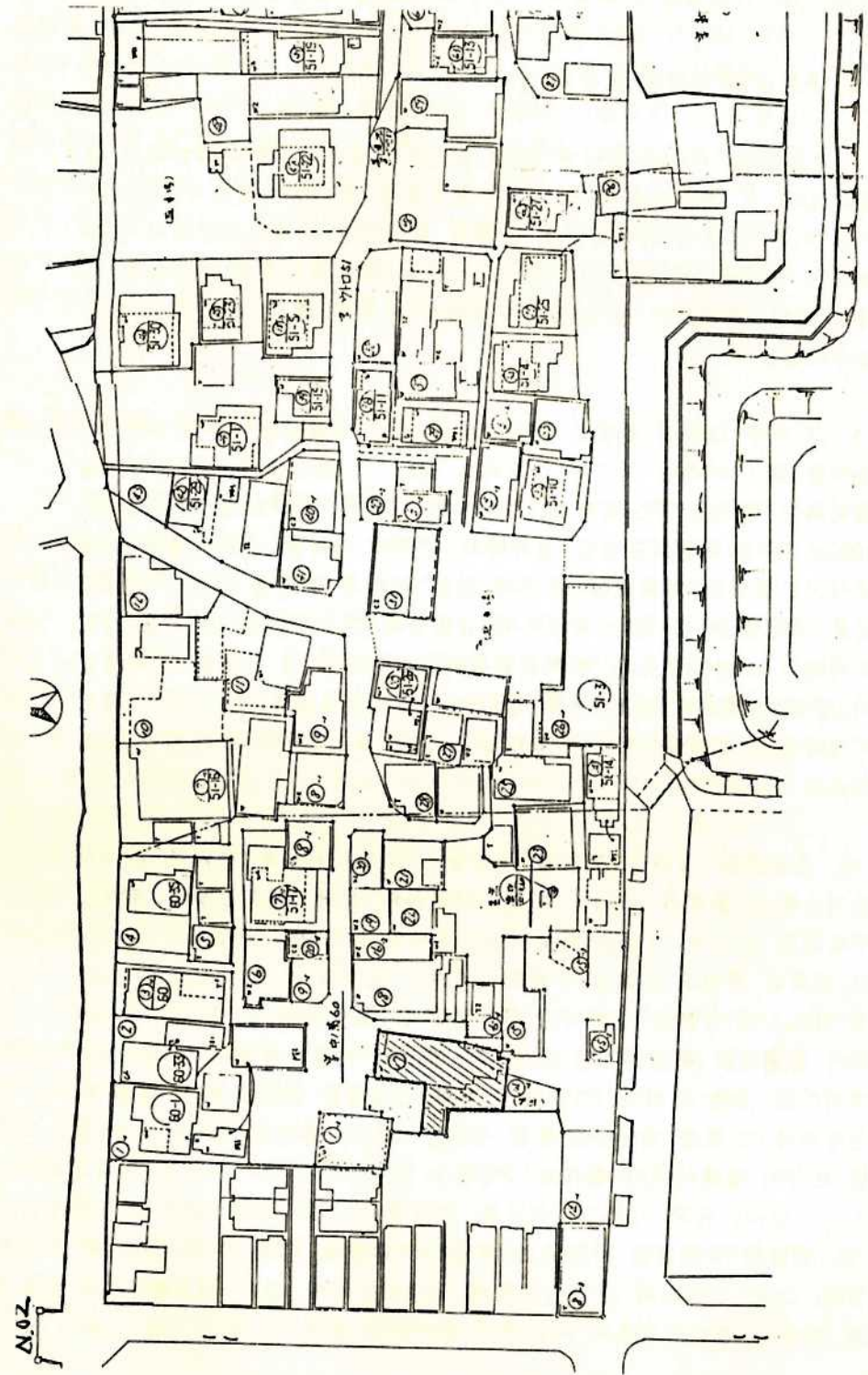
(4) 화해의 주선과 결렬

그리하여 일찌기 이 사건은 어떻게 하면 원만히 화해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초점이 모아져 왔고,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95년 4월 28일 재판부에 의하여 제 2차 화해안으로 주민들이 금 17억엔으로 일괄매수하는 안이 제시되었으나, 주민들로서는 위 금액으로 매수할 경우 전유부분이외의 공유부분까지 모두 포함되므로 평당단가는 40만엔 수준이 되어 주민들이 희망하는 평당단가 11만엔, 총대금 7억400만엔보다 훨씬 상회하여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5) 변론종결시점의 촉박

이 사건 소송이 완료되지 않은 또 하나의 문제점은 대상건물의 위치, 면적, 형태에 대한 현장 검증, 측량이 아직도 이루어져 있지 않거나 철거대상건물 및 명도하여야 할 대상토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원고는 항공측량한 사진에 의거하여 대상건물의 위치면적을 특정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써 소송물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현 재판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여 측량감정을 실시하려고 하나 주민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에서는 지난 1997년 7월 4일에 측량감정 안고도 제시된 내용에 따라 판단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9월 8일에 결심키로 하였다.

(참조 도면- 항공사진에 의하여 구성한 지적도면)



5. 전후보상처리 및 국제규약상의 거주권인정문제

가.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의 활동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은 1989. 3. 22. 교오토오변호사회관에서 결성되었다. 위 회원들은 주부, 교사, 공무원등 약 200명이참석하였으며, 그날 이후 70명이 가입하였으며 현재 북쪽으로는 홋카이도에서 남쪽으로는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약 2,0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회원들은 모두 일본인들인데 이들은 왜 그와 같은 모임을 결성하였는가.

그 이후 그들의 활동은 1992년 7월 15일 조일신문사에 편찬한 '이웃사람'(隣人)이라는 책자에 소개되고 있다. 이 모임에서는 일산차체에 항의하는 행사를 주도하였고, 주부회원 다가와 아끼코(田川明子)씨는 1990년 봄 일독평화포럼에 참가하기 위하여 서독을 방문하였다.(이번 조사기간중에 다가와씨는 여전히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었다). 일본 국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여 사회당에서는 1994년 6월 4일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였으며, 중의원법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토의하였다.(중의원 회의록 참조-부록) 1990년 8월12일에는 바로 우지시 이세 다정에서 국제평화포럼이 개최되었고, 이때 우토로지역의 문제가 심층적으로 논의되었다.

나.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의 주체들은 우토로지역의 문제를 단순한 토지소송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범죄극복의 문제, 전후보상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을 이웃사람으로서의 동정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법적인 책임의 문제로 구체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을 평화적인 선진문화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고, 지금까지 물편하고 미흡하였던 일본인의 양심을 건전하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듯하다. 그들의 열정과 신실함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선명하다. 그들은 재일동포에게 가해진 억압과 유린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상이 행하여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대표적인 인물은 사이또오 마사키(齊藤正樹, 47세 우지시직원)씨이다. 그는 우지시의 공무원으로서 우토로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약관의 청년시절부터 지금까지 관여하고 있다. 그가 제기하는 문

제는 이미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있다. 그의 주장은 일본정부는 1965년 6월 22일의 한일협정 제 2조 제 2항에 의하여 재일한국인, 조선인에 대한 전쟁책임이 남아 있으며, 1976년동에 이미 일본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 A규약 제 11조 및 1993년도 유엔 인권위원회의 강제퇴거에 관한 결의의 국내법적 효력에 의하여 일본정부 및 법원은 건물철거 및 명도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닛산은 우토로주민의 거주권보장을 위하여 3억엔 이상을 출연함으로써 사회공헌을 하여야 인간의 얼굴을 지니고 아시아민중과 새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등이다. 일본인으로서서는 참으로 발설하기 어려운 주장인데 그는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6. 우토로를 지원하는 모임의 필요성

우토로지역의 재일한국인들을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일본인들은 이웃사람으로 받아 들이고 있으며, 그들이 현재 거주권에 대하여 위협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 그들이 이 지역에서 쫓겨난다면 그들은 달리 갈 곳이 없다. 그들은 모든 생활의 근거지에서 배척당하고 사실상 유랑하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점을 우토로지역 주민 자신들은 잘 알고 있으며, 같은 지역의 주민들도 알고 있다. 교오토오부나 우지시, 그리고 이 사건의 재판관을 담당하는 교오토오재판소에서조차 우지시 주민들이 재판의 결과에 의하여 아무런 보장도 없이 쫓겨 나가는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그들은 현재의 국내 실정법과 우토로주민들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국제규약사이에서 쉽사리 판단을 내리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은 이미 우토로지역주민의 거주권을 세계의 NGO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지역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이와 비슷한 여건에 처한 세계인의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우토로지역 재일동포의 문제에 관하여 같은 일본지역내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듯하다. 그들자신이 또 다른 재일동포의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리고 모국이라할 한국에서의 관심도 부족한 듯하다. 자기 앞의 삶만에 허덕이다 보니 그렇게 되었을까.

지금 우토로지역 재일동포들은 모국의 힘을 필요로 한다. 모국에서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참고자료 - 아사이신문사 편저 '이웃사람' 1992년 7월 15일 간

- 교오토오부의회 회의록 1989년 6월 20일 자

- 참의원 의원 정민 1990. 1. 23. '우치시의 재일조선인 문제에 관한 조사보고서'

- 사이또오 마사끼(齊藤正樹) '우토로를 지키는 투쟁...금후의 방안' 계간 '인권' 1996년 가을호 기고문

- 우지시, 平成7년 국세조사결과 보고

- 조정희 '우토로의 재일조선인에 관하여'